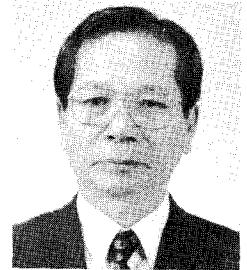


산림 양묘의 오늘과 내일

한국양묘협회장
李 在 石



1. 산림양묘의 역사

우리나라 산림양묘는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1907년 구한말(舊韓末) 통감부 시대에 관영 묘포로 시작이 되었다.

1907년 한수이북 황해 강원지역을 경성(京城)사업소가 담당하고 한수 이남지역을 수원 사업소가 담당하고 관서(關西)지역을 평양사업소가 담당하여 묘포 32.8정보에 묘목 3,385천본을 생산하였고 1908년에는 대구 목포 경성(鏡城)사업소를 추가하여 6개사업소에 51정보의 묘포면적을 확보하고 연 9,213천본의 묘목을 생산하였는바 수종은 적송, 아까시아, 곱슬, 밤나무, 오리나무등이었다.

1910년 한일(韓日) 합방이 되고 충청남도에서 조치원에 도영묘포를 개설하고 다음해부터는 각도에 도영묘포를 개설하였고 1912년 3월 30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 35호로 임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묘의 구입 배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각 군에는 면(面)모범 묘포를 설치하여 양묘시범을 보이면서 산림묘포 사업은 급격한 발전을 보았다.

때를 같이하여 일본 재벌들이 대부림(貸付林)에 조림할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특수묘포

를 경영하기 위하여 일본에서온 민간 양묘업자가 점차 증가하여 국영묘포는 영림창 소묘묘목만 생산하고 민유림 조림용 묘목은 민영묘포에 이관하였고 도영묘포는 특수양묘, 시험양묘에 주력하였다.

그래서 1923년을 전후하여 남북한을 합하여 매년 묘목생산량이 약2억본을 넘었으며 산림묘포 사업면적도 2,800 정보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 산출용 묘목의 형질(形質)표준을 정한 것은 1911년 총독부 통첩으로 산출묘에 대한 최소표준(最少標準)을 정한 바 있고 1914년 1월 1일 처음으로 농상공부장 통첩 407호로서 19종에 대한 이식회수, 간장(幹長), 근원경(根元徑), 묘령(苗齡)등을 구분 지정한 역사가 있다.

일정시대 민영양묘는 주로 일인(日人)들이 각도에 산림종묘조합을 결성하여 생산을 독점하였고 우리나라 생산자는 몇사람 되지를 않았다.

1945년 해방이되고 일인들이 물러가고 남은 한국인 생산자와 일본인 묘포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규합하여 산림종묘조합을 산림회(山林會)에 흡수 통합 운영해 오다가 1952년에 중앙 및 각도에 임의단체 양묘협회가 산림회에서 분리 탄생하였고 1961년에는 한국양묘협

회가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하여 해방이후 1962년까지 민유림 조림용 묘목의 대부분을 양묘 협회 회원들이 생산 공급하였다.

1961년 산림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종묘 생산판매업 자격을 규정하고 산림종묘의 품질 검사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양묘 역사에 특기할만한 일은 산림계(山林契) 양묘와 마을양묘 제도였다.

산림계양묘는 그 취지가 부락산림계의 기본 재산 조성과 산림계원의 임업기술 습득 및 자기가 생산한 묘목으로서 조림함으로서 조림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공동사업을 통한 협동 정신을 길러보자는 뜻이 있어 1962년부터 생산하기가 쉬운 아까시아, 리기다송 묘목의 일부를 생산케 하였는바 공동사업이나 협동정신의 결핍, 양묘기술 부족 등으로 실패하고 1964~1970년에 걸쳐 산림조합이 이를 승계하게 되었다.

마을양묘 문제는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1972년도에 향후5년 이내에 민영 양묘는 일반 기업양묘와 산림조합양묘는 없애

고 전량 마을양묘로 충당한다는 정책 당국의 계획이었으나 이도 기술상의 문제, 양묘수지(收支)상의 문제, 제도상의 문제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사업을 4년 앞당겨 마치고 전문가로 편성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평가단(評價團)에서 마을양묘는 지양하고 산림양묘는 전문기술자에게 맡겨야겠다는 결론이 나와 그후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되었다.

그 후 상당기간 민영양묘는 일반 기업양묘와 산림조합양묘가 존속해 오다가 1993년 임업 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영양묘는 일반 기업양묘로 일원화 되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민영양묘는 후세의 사가(史家)들이 어떻게 기록 할른지 모르지만 정부가 산림종묘의 기술적 감독보다는 정책적으로 양묘소득의 분배에 치중하여 산림양묘의 기조(基調)전환과 민주화에 큰 문제점을 남겼다.

참고로 다음에 1960년대이후 연차별 묘목 생산자수, 묘포전면적, 그리고 산출묘 생산량 및 생산주체별 생산량을 적어보면 다음 I. II 표와 같다.

〈표 I〉 연차별 양묘 시업 상황표

연차별	시업자수(인)		묘포전면적(ha)		성묘생산량(백만본)		생산자1인당
	총 수	연평균	총 량	연평균	총 량	연평균	연생산량(천본)
61-70	21,647	2,164	18,349	1,834	6,732	673	311
71-80	44,829	4,482	24,360	2,436	3,994	399	89
81-90	4,142	414	8,351	835	1,549	154	373
91-96	1,284	214	2,807	467	448	75	350
합 계	71,902	1,997	53,867	1,496	12,723	353	168

〈표 II〉 연도별 생산자별 묘목 생산 실적표

(단위 : 천본)

연도 생산자별	계	마 을	임 협	임 시	기 업	기 타	관리청	비고
1961	258,000				252,800		5,200	
1962	471,000				465,900		5,100	
1963	695,000		450,000		239,300		5,700	
1964	965,000		473,000		483,700		8,300	
1965	560,000		230,000		318,000		12,000	
1966	473,000		170,000		283,000		20,000	
1967	1,741,000		713,000		1,013,000		15,000	
1968	543,000		159,000		370,000		14,000	
1969	581,000		173,000		373,000		35,000	
1970	445,000		124,000		291,000		30,000	
소 계	6,732,000		2,492,000		4,089,700		150,300	
1971	382,000		82,000		268,000		32,000	
1972	260,000		74,000		173,000		13,000	
1973-76	1,983,561	651,978	386,176	19,835	751,142	82,669	91,761	
1977	465,235	105,569	96,209	3,939	210,763	17,355	31,400	
1978	319,916	64,727	75,080	-	148,975	12,285	18,849	
1979	308,300	72,792	66,066	3,451	136,954	10,305	19,092	
1980	274,806	39,020	72,279	5,283	131,910	8,202	18,112	
소 계	3,993,818	934,086	851,810	325,082	1,820,384	130,816	224,214	
1981	263,751	23,700	75,548	2,772	137,592	7,293	16,846	
1982	244,296	6,359	81,458	2,458	132,074	8,519	13,628	
1983	166,845	2,286	61,782	1,875	89,886	920	10,096	
1984	147,210	389	51,258	1,054	84,677	3,877	5,955	
1985	157,429	358	59,513	1,166	86,280	4,000	6,112	
1986	150,626	180	58,404	1,299	81,721	4,209	4,813	
1987	137,586	177	54,629	914	75,729	1,763	4,374	
1988	108,612	113	43,573	924	58,994	1,430	3,578	
1989	86,591	75	36,011	970	45,386	440	3,709	
1990	86,461	35	35,173	702	44,378	1,347	4,826	
소 계	1,549,607	33,672	557,349	14,134	836,717	33,798	73,937	

생산자별 연도	계	마을	임협	임시	기업	기타	관리청	비고
1991	90,584	38	34,124	981	42,767	1,252	11,422	
1992	83,175	151	28,562	402	40,294	572	13,194	
1993	75,978	180	22,752	413	41,509	325	10,799	
1994	64,134	48	14,474	280	38,287	561	10,484	
1995	61,882	·	10,145	344	41,120	392	9,881	
1996	72,113	·	11,678	854	50,627	282	8,672	시업상황
소 계	447,866	417	121,735	3,274	254,604	3,384	64,452	
합 계	12,723,291	968,175	4,022,894	49,916	7,001,405	167,998	512,903	

2. 산림양묘의 현황과 문제점

전술한 산림양묘의 역사에서 본것같이 어느 때는 사방사업과 연료림조성을 1년에 끝마친 다하여 1년에 17억본의 산출묘를 생산하는 해가 있는가 하면 90년대를 전후하여 연간 1억본 미만으로 산출묘 생산이 줄어들었다.

뿐만아니라 민영양묘의 경우 마을양묘 산림계양묘 산림조합양묘 기업양묘등 생산자수가 60년대는 2,164명 70년대는 4,482명 80년대는 414명 90년대는 221명으로 생산자 1인당 연평균 산출묘생산량은 20만본 내외였다.

이와같이 연차별로 생산량이 크게 차이가 있음은 물론 생산자수가 너무많아 1인당 시업량이 영세(零細)하여 양묘를 전문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생산자 1인당 연평균 산출묘생산량을 20만본으로 보고 불변가격으로 본당200원으로 계산할 때 묘목판매대 외형은 4천만원 이다.

이 4천만원의 연간 기업이윤을 아무런 묘포재해가 없을 때 묘목대 외형의 10%로 보더라도 연 소득이 4백만원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종전의 산림양묘는 마을 산림계 산림조합 기업양묘 할것없이 소득에는 보탬이

되지지를 못했고 산림양묘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림양묘의 규모화(規模化), 기계화(機械化), 전문화(專門化)에 역행하는 제도였음에 틀림없었다.

지금도 산림법이나 산림법시행령에 마을학교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림종묘 생산 판매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업협동조합법 제정과 동시에 산림종묘 생산 판매는 전문 기업양묘로 일원화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조림이 있는곳에 양묘가 있는 것임으로 향후 조림물량은 산화적지 및 병충해 피해지와 수종갱신조림, 환경조림, 그리고 해마다 들어가는 폐경농지조림을 감안 한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년3만정보에 약 1억본의 산출묘가 소요될것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국유림조림은 국영묘포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민영양묘의 경우 약 80명의 전문생산자가 있어서 1인당 생산규모로 보아서는 적정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70년대초 우리나라가 여러차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방향은 공업입국을 위해 추진된것임으로 향후 농산촌의 노동력 동공상태(洞空狀態)는 불을 보는 것같이 환한 것이였다. 따라서 산림종묘 정책이

이에 기조를 같이하여 산림양묘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성력(省力)양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산림양묘는 전문 기업양묘를 없애고 전량 마을양묘로 대체 한다는 시책이 나와 이때 기업양묘하는 분들이 곧 없어질 산림양묘에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다.

다시말하여 그때는 땅값도 싸고 모든 산업이 근대화를 위해 줄달음 칠 때 년간 예산팽창이 40%를 초과하여 비교적 예산확보도 쉬울 때 양묘 구조조정을 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정한 규모의 크기로 고정묘포를 확보하고 스프링쿨리장치를 하여 전천후 양묘가 가능해야하며 기계화를 시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도가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필요한 고정 묘포는 500정보인바 지금 생산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묘포는 200정보내외로 이중 절반은 고정묘포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형편에 있다.

때문에 앞으로 약 400정보의 고정 자가묘포를 새로 조성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민영양묘의 경우 생산묘의 절대다수가 정부독점 수요로 인하여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묘목생산비의 50 - 60%가 인건비인데 이 인부임 단비 적용에 있어 1995년 산의 경우 남자1인1일 23,440원 여자1인1일 18,110원을 적용하니 실지와는 30%이상 큰 차이가 나서 묘목 가격이 현실화 되지않아 생산자들이 이 단비에 마추어 생산하다보니 축소재생산(縮少再生産)이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여 묘목의 형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산림양묘의 총체적 규범이라고 할수있는 산림청예규 종묘사업실시요령은 우리나라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할때 호미로 밭을 매는 시대에 만든 것임으로 이는 대폭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묘포의 기계화는 불

가능하다. 또한 외국의 산림묘포의 예와같이 이식(移植)을 줄이고 단근작업(斷根作業)으로 대신하여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3.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

현 산림양묘의 문제점은 전술한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생산단비를 줄이고 우량건묘를 생산하여 조림사업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마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이 있고 양묘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림종묘의 국가 감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 몇가지를 제시코자 한다.

(1) 산림종묘에 관한 산림법령 개정

먼저 산림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산림법 제45조는 산림종묘는 일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생산할수 없도록 한 것이 본법의 정신인데 이에 반하여 산림용 묘목의 생산판매를 업으로 하는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해놓고 산림법 제45조의 단서에 마을과 학교가 종묘생산 판매를 할수있는 길을 터놓았다. 마을과 학교가 종묘생산 판매를 한다면 국민 누구나 다 양묘가 가능한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산림법 제45조의 단서가 없어져야한다. 또 산림법 시행령 제45조에 산림종묘생산 판매업의 자격을 규정한 내용을 보면 임업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기 산림종묘 판매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도 임업협동조합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여타 산림종묘 생산판매업 자격도 문호가 너무 개방되어 법상 산림종묘 생산판매업 자격을 규정한 의미가 상실 되었음으로 산

럼 종묘 생산판매업의 자격을 강화(強化)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산림양묘의 구조조정 내지는 개선에도 시대한 영향을 하지만 산림종묘의 국가감독이 대단히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또 산림종묘 가격은 산림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에 의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지방화시대에 각 지방마다 특수한 수종이 있고 또 그 수가 많으며 같은 수종이라

도 지방에 따라 묘목의 성장속도가 다르고 묘목생산비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인부임이 지방마다 다른데도 종묘의 규격이나 가격을 획일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지역간에 공평성을 잃는다.

그래서 산림법 시행령 제46조의 2항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임업협동조합 및 생산자가 협의한 가격에 의하여 종묘가격을 결정할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정생산비의 보상은 곧 종묘의 형질생산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고로 산림종묘에 관한 현행산림법령에 필요한 개정(안) 및 개정사유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산림법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산림법 시행령 제45조 (종묘생산업자의 자격등) ①	산림법 시행령 제45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등) 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가. ----- 나. ----- 다. ----- 라. ----- 마. ----- <p><u>바.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 협동조합 중앙회</u></p> <p>사. -----</p>	① 임업협동조합법과 상치 ② 임협과 임협중앙회는 법인격으로 종묘생산업자일 수 없음
2. 관상수 생산업자의 등록자격	2. 관상수 생산업자의 등록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임업협동조합법과 상치
가. ----- <u>나.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 협동조합 중앙회</u>	나. ----- <u>작제</u>	
산림법 시행령 제46조의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종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산림법 시행령 제46조의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1. ----- ----- ----- ----- ----- ----- ②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임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지회, 광역시지회, 도	지방화 시대에 각 지방마다 특수한 수종이 있을뿐만 아니라 같은 수종이라도 지방에 따라 성장속도가 다르고 묘목생산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쳐야 한다.	지회와 생산자가 협의한 가격에 의할 수 있다.	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일부임이 지방마다 달라서 전국 생산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음
신설 산림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이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산림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묘포시설의 근대화

묘포시설의 근대화는 우선 1단지 일정규모 이상의 고정묘포를 설정하고 여기에 판배수(灌排水)시설을 함과 동시에 전천후 유묘(幼苗) 생산을 할수있는 시설을 하여야한다. 이렇게 해야만 묘포사업의 기계화가 가능하고 근자 지구 남극의 오존층 파괴로 지구 도처에서 기상 이변으로 가뭄 폭우 이상한파(寒波) 난동(暖冬) 등으로 국지적 기상재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제 양묘기술도 종전의 양묘기술로는 양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 이상기후에 대처할수있는 양묘시설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최근 산림묘포의 기상재해가 늘어가고 있는것은 산림묘포의 경우 묘목이 년중 자연에 노출된것이라 어느 작목(作目) 보다 크다.

참고로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산림묘포의 재해(災害)율은 7.2%였는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산림묘포 년평균 재해율은 14.9%로서 종전보다는 거의 2배에 달한다.

이것은 산림양묘의 기업이윤(企業利潤)을 앞지르는 수치이다. 그래서 전술한 산림양묘의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우리나라 민영양묘의 경우 약 500정보의 산림고정묘포가 필요하다. 그중 100정보는 기존 고정묘포를 활용한다해도 약400정보의 고정묘포를 새로 설정해야한다.

1개 포지를 10정보씩 하여 전국에 약 40여 개소, 한도에 4-5개의 새로운 고정묘포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에 걸쳐 일년에 100정보씩 조성 시설을 하여야한다.

이 고정묘포 설정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포

지구입비 구획조성비 스프링쿨러 시설 및 유효생산에 최소한의 시설비가 소요되는바 이에 필요한 자금은 년간 약100억원 총 400억원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 자금은 농특회계에서 산림묘포 구조 조정자금으로 구입묘포를 후취 담보하여 10년거치 5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묘포작업의 기계화 문제는 산림묘목이란 작물의 생리상 완전 기계화는 대단히 어렵다. 선진 임업국의 묘포사업도 역시 기계화는 한계가 있고 특히 기계의 개발은 산림묘목 시장이 현재로서는 년 100억원 내외임으로 농업기계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곳에서는 이의 취급을 기피하고 있어 이는 임업연구원이나 생산자가 산학연 합동으로 개척해야할 과제이다.

지금은 모든 산업분야가 세계화 개방화 하고있으며 양묘분야 또한 일찍이 개방되었다.

외국자본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국내 양묘사업을 잠식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양묘사업의 근대화는 양묘의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화, 기계화, 전문화를 하여 찬값으로 우량한 묘목을 생산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수가 있다.

(3) 산림종묘의 국가 감독

산림종묘의 국가 감독은 생산자의 자격규정 종묘의검사제도 시업의 감독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것은 종자의 국가관리 제도라고 본다. 임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 종자관리소에서 종자를 취급한다. 그리고 산림종묘법이 있어서 종자의 기원(起源), 종자의 배포구역등이 정해 있어서 미국은 산림종묘법에 종묘의 배포구역이 수직적분포도 문제가 되지마는 수평으로는 100마일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묘포장에 가보면 포지마다 수종마다

해발 몇m에서 딴 종자라고 간판이 붙어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종자는 국가 관리가 되고있으나 일부 수종에 국한되고 있어 필자의 견해로는 임목육종연구소 채종원에서 나오는 종자와 우수한 채종립에서 나오는 종자로만 양묘하도록 육종연구소 직제를 늘려 종자 관리소를 몇군데 신설하여 전량 국고로 종자를 채취, 생산자에게 배급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래서 종자는 국고로 채취한 것임으로 묘목생산비에 종자대를 계상하지 않으면 된다.

산림종자는 다른 농산물 종자와도 달라 조림후 백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하는것으로 종묘생산판매업 등록을한 생산자 일지라도 민간인에게 팔기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외국과 산림종자 거래를 해보면 종자의 품질은 곧 그 나라 문화척도와 비례할만큼 민감한 것이다.

그리고 산림종묘의 국가 감독에 있어 현행 산림청예규 종묘사업 실시요령은 전면 개폐(改廢) 할것을 건의하고 싶다. 현행 산림청 예규는 묘포사업의 기계화가 전연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예를들면 낙엽송 1-1의 경우 상면적 m^2 당 64분을 이식하게 되어있는바 제초를 하던지 시비(施肥)를 하던지 전연 기계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시험을 거쳐 종묘사업 실시요령을 제정할수가 없음으로 잠정적으로라도 이 사업기준은 없애고 묘목의 규격만 정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기계화에 따른 기준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우리 경제체제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아니라 하드라도 자본사회화의 경제체제다. 지난날 우리 산림사업은 이 경제체제에 반하여 모든 산림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다시 말하여 산림계 공동사업, 마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한것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임업을 하나의 자본사회에서 산업으로 육성하지 못하였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산림양묘사업 역시 산림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고 어느 임업부분 보다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것을 국민개양묘(國民皆養苗)로 실시해 왔다. 지금 우리 전체 산림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산림양묘도 기조(基調)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환연하면 전문기술을 요하는것은 전문인에게 맡겨져야 하며 또 양묘의 구조 개선을 위해 규모화하고 기계화를 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종묘의 질을 향상하고 생산비를 줄이며 산림종묘의 안정적 공급을 할수있도록 볍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산림종묘 정책이 여기에 초점을 마주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으로 당면한 산림양묘의 과제는 묘포의 규모화, 기계화, 전문화에 있다고 판단 된다.